



# 근무시간 중 투표 허용

투표소는 선거일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합니다. 이 시간대가 근무시간과 겹치는 경우, California 법에 따라, 급여 삭감 없이 최대 두 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빼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.

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표를 하셔도 좋으나, 총 두 시간에 대한 급여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
근무 시간 중 투표는, 고용주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한, 정기 근무 시간의 시작이나 끝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.

투표를 위해 근무 시간을 빼야 하는 경우, 최소 선거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이틀 전까지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.

California 선거법 제 14000항